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2. 9 선고 2022가단1783 판결 [토지매수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진주시

소송대리인 B, C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대 57㎡를 매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진주시 D 대 137㎡」는 원고 소유였는데, 2014. 2. 19. ① 「진주시 E 대 80㎡」와 ②

「진주시 D 대 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위 ① 토지는 진주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F공사’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위 ① 토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양도하고(공공용지 협의취득) 2014.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5. 18. 위 ①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① 토지를 도로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분할 후에 그 면적이 적어져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할 때, 피고에 대한 매수청구 및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로 개설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6. 6.

30.로서 그 무렵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

판사 이장형